

2026년 5월 19일 개정

# 이사회 규정



# 이사회 규정

서기	2017년	6월	1일	제	정
서기	2019년	1월	22일	개	정
서기	2019년	4월	16일	개	정
서기	2020년	1월	29일	개	정
서기	2026년	5월	19일	개	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3 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제 5 조 (의장)

- ①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 ③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대행하되, 지정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내이사 중 상위직급자
  2. 독립이사

### 제 6 조 (개최 시기)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제 1 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7 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금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시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자,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자,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선임을 제한하도록 한다.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 상법 542 조의 9

- 제 3 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승인(다만, 동조 제 5 항 제 2 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함), 주주총회에의 보고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공동대표의 결정
- (4)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회장 등 임원의 선임 시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자,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자,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선임을 제한하도록 한다.
-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6)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다만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9)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 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3) 기본조직의 편성 및 개폐
- (14) 신규사업의 결정
- (15) 중요한(자기자본 5% 이상) 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
- (16) 대규모(자산총액의 5% 이상)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17) 이사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 운영규정(운영기준)의 개폐
- (18)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1) 신주의 발행
- (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3) 준비금의 자본전입
- (4) 전환사채의 발행
-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6)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7) 자기주식의 소각
- (8) 대규모(자기자본의 5% 이상) 투자에 관한 사항

- (9) 대규모(자기자본의 2.5% 이상)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 (10)결손의 처분
- (11)대규모(자기자본의 5% 이상) 차입 및 지급보증
- (12)대규모(자기자본의 2.5% 이상)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대여
- (13)<삭제>
- (1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제정 및 개폐
- (15)분기배당에 관한 사항의 결정
- (16)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 (1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자기주식보고서의 승인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 또는 경업의 승인

#### 5. 기타사항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2) 중요한 소송의 제기
- (3)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 (4)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
-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승인
-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3. <삭제>
- 4. 경영실적(월/누계) 보고
- 5. 자금수지 보고
- 6. 계열사와의 중요한 거래
- 7. <삭제>
- 8. <삭제>
- 9.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10.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11 조 (긴급사항)

-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위원회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는 독립이사가 되도록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당해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⑤ 위원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 40 조(이사회내 위원회), 제 41 조(이사회 결의방법) 규정을 따르되,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정관 제 44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 46 조(감사위원회 감사록)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⑥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⑧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제 13 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14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15 조 (의사록)

- ① 이사회 결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⑤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 **제16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 년 5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 4 조, 제 5 조, 제 12 조 개정규정은 2026 년 7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